

PART 2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4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제4절 평가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상충하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위원회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약 70% 중반을 상회하다가 2024년에는 80%를 돌파했다(80.9%). 인터넷상의 미디어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이 주류가 되면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도 증가하여 위원회에서도 유튜브 영상 관련 조정신청 사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공식채널에 게재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유튜브 관련 새로운 유형의 사건 접수가 이루어져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아닌 자가 제공한 유튜브 등의 뉴스 콘텐츠는 조정대상에는 포함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 관련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3,937건으로 전년 대비 148건(3.6%) 감소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구분 \ 연도	2022	2023	2024
청구건수	3,175	4,085	3,937

2 청구권별 현황

2024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은 정정보도청구 1,824건(46.3%), 손해배상청구 1,231건(31.3%), 반론보도청구 825건(21.0%), 추후보도청구 57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2. 1. 1. ~ 2024. 12. 31.)

청구명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정정보도		1,432 (45.1)	1,943 (47.6)	1,824 (46.3)	5,199 (46.4)
반론보도		653 (20.6)	731 (17.9)	825 (21.0)	2,209 (19.7)
추후보도		81 (2.6)	99 (2.4)	57 (1.4)	237 (2.1)
손해배상		1,009 (31.8)	1,312 (32.1)	1,231 (31.3)	3,552 (31.7)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53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73건(12.0%), 신문 376건(9.6%), 방송 317건(8.1%), 뉴스통신 176건(4.5%)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매체유형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신문	일간 신문		234 (7.4)	388 (9.5)	287 (7.3)	909 (8.1)
	주간 신문		75 (2.4)	99 (2.4)	89 (2.3)	263 (2.3)
	방 송		387 (12.2)	345 (8.4)	317 (8.1)	1,049 (9.4)

매체유형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잡 지	6 (0.2)	8 (0.2)	10 (0.3)	24 (0.2)
뉴스통신	149 (4.7)	218 (5.3)	176 (4.5)	543 (4.8)
인터넷신문	1,857 (58.5)	2,491 (61.0)	2,537 (64.4)	6,885 (61.5)
인터넷뉴스 서비스	450 (14.2)	498 (12.2)	473 (12.0)	1,421 (12.7)
기타	17 (0.5)	38 (0.9)	48 (1.2)	103 (0.9)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4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3,810건(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85건(2.2%), 음성권 침해 6건(0.2%), 재산상 손해 4건(0.1%), 성명권 침해 3건(0.1%) 등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침해유형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명예훼손	3,093 (97.4)	4,042 (98.9)	3,810 (96.8)	10,945 (97.7)
초상권 침해	41 (1.3)	21 (0.5)	85 (2.2)	147 (1.3)
음성권 침해	2 (0.1)	1 (0.0)	6 (0.2)	9 (0.1)
성명권 침해	2 (0.1)	3 (0.1)	3 (0.1)	8 (0.1)

연도 침해유형	2022	2023	2024	합계
사생활 침해	15 (0.5)	3 (0.1)	1 (0.0)	19 (0.2)
재산상 손해	19 (0.6)	4 (0.1)	4 (0.1)	27 (0.2)
기타	3 (0.1)	11 (0.3)	28 (0.7)	42 (0.4)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24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154건(5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단체 819건(20.8%), 기업체 456건(11.6%), 지자체 181건(4.6%), 교육기관 131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기업체, 언론사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반면 교육기관, 일반단체, 지자체의 청구건수는 증가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신청인	2022	2023	2024	합계
개인	1,699 (53.5)	2,225 (54.5)	2,154 (54.7)	6,078 (54.3)
국가기관	32 (1.0)	77 (1.9)	76 (1.9)	185 (1.7)
지자체	85 (2.7)	154 (3.8)	181 (4.6)	420 (3.8)
공공단체	100 (3.1)	101 (2.5)	54 (1.4)	255 (2.3)
일반단체	710 (22.4)	536 (13.1)	819 (20.8)	2,065 (18.4)

신청인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종교단체	28 (0.9)	46 (1.1)	19 (0.5)	93 (0.8)
기업체	441 (13.9)	757 (18.5)	456 (11.6)	1,654 (14.8)
언론사	39 (1.2)	141 (3.5)	47 (1.2)	227 (2.0)
교육기관	37 (1.2)	48 (1.2)	131 (3.3)	216 (1.9)
기타	4 (0.1)			4 (0.0)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4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3,937건 중 서울중재부(8개)가 2,923건(74.2%), 지역중재부(10개)가 1,014건(25.8%)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226건(5.7%), 전북중재부 158건(4.0%), 대구중재부 126건(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중재부는 69건(1.8%), 제주중재부는 42건(1.1%)을 접수하여 2023년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중재부는 매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중재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가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2. 1. 1. ~ 2024. 12. 31.)

중재부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서울중재부	2,377 (74.9)	3,114 (76.2)	2,923 (74.2)	8,414 (75.1)
부산중재부	55 (1.7)	23 (0.6)	69 (1.8)	147 (1.3)

연도 중재부	2022	2023	2024	합계
대구중재부	114 (3.6)	123 (3.0)	126 (3.2)	363 (3.2)
광주중재부	81 (2.6)	117 (2.9)	111 (2.8)	309 (2.8)
대전중재부	60 (1.9)	67 (1.6)	82 (2.1)	209 (1.9)
경기중재부	250 (7.9)	357 (8.7)	226 (5.7)	833 (7.4)
강원중재부	25 (0.8)	33 (0.8)	38 (1.0)	96 (0.9)
충북중재부	39 (1.2)	82 (2.0)	101 (2.6)	222 (2.0)
전북중재부	50 (1.6)	98 (2.4)	158 (4.0)	306 (2.7)
경남중재부	99 (3.1)	58 (1.4)	61 (1.5)	218 (1.9)
제주중재부	25 (0.8)	13 (0.3)	42 (1.1)	80 (0.7)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경로별로는 이메일이 3,026건(7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신청 접수 건은 2023년에 비해 감소하여 2024년에는 721건(18.3%)이었고, 방문 115건(2.9%), 우편 53건(1.3%), 구술 2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과 전자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2022년 95.5%, 2023년 96.4%, 2024년 95.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우편·구술 등의 오프라인 접수방법 중 2024년 방문·구술 접수 건(방문 115건, 구술 22건)이 2022년, 2023년에 비해 대폭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대면 접수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구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계
2022	49 (1.5)	93 (2.9)	1,083 (34.1)	2 (0.1)	1,948 (61.4)	3,175 (100.0)
2023	46 (1.1)	97 (2.4)	1,123 (27.5)	5 (0.1)	2,814 (68.9)	4,085 (100.0)
2024	115 (2.9)	53 (1.3)	721 (18.3)	22 (0.6)	3,026 (76.9)	3,937 (10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24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452건(36.9%), 취하 1,308건(33.2%), 조정불성립결정 649건(16.5%), 기각 336건(8.5%), 직권조정결정 154건(3.9%), 각하 38건(1.0%) 순이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 및 피해구제로 취하 처리된 사건의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3.5%에서 8.5%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2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29.9	2.2	1.1	21.5	14.2	6.1	21.6	3.5	
2023	4,085	1,599	61	34 [3]	793 [20]	145	113	1,152	188	74.1%
	%	39.1	1.5	0.8	19.4	3.5	2.8	28.2	4.6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4	3,937	1,452	88	66	649 [14]	336	38	1,028	280	72.5%
	%	36.9	2.2	1.7	16.5	8.5	1.0	26.1	7.1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 100

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24년 피해구제율은 72.5%로 전년의 74.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고, 피해를 구제받고 취하한 사건의 비율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 \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2	3,175	643	2,532	1,712	67.6%
2023	4,085	258	3,827	2,835	74.1%
2024	3,937	374	3,563	2,582	72.5%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8.5%, 반론보도청구 37.6%, 추후보도청구 31.6%, 손해배상청구 34.2%로,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해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추후 보도청구의 경우 2023년은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높았지만, 2024년에는 실제 심리를 개최한 후 조정이 성립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조정성립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각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한 모든 청구권에서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기각 건수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특정 신청인이 다수의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들이 대거 기각 처리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 또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보도	1,824 (100.0)	703 (38.5)	69 (3.8)	301 (16.5)	141 (7.7)	23 (1.3)	492 (27.0)	95 (5.2)
반론보도	825 (100.0)	310 (37.6)	42 (5.1)	111 (13.5)	62 (7.5)	4 (0.5)	236 (28.6)	60 (7.3)
추후보도	57 (100.0)	18 (31.6)		14 (24.6)	2 (3.5)	1 (1.8)	17 (29.8)	5 (8.8)
손해배상	1,231 (100.0)	421 (34.2)	43 (3.5)	223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계	3,937 (100.0)	1,452 (36.9)	154 (3.9)	649 (16.5)	336 (8.5)	38 (1.0)	1,028 (26.1)	280 (7.1)

*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정정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지자체가 일부의 민원만 듣고 공장 건설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령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반론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기관 승진심사에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사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3. 추후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각자 개인 돈으로 광고 매출을 올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4. 알림보도 및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법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법인 등기부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속 구성원들의 이름, 개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 삭제를 알리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유감 표명의 내용을 담은 알림보도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회사 창업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고객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회사 창업주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① 처리현황

2024년 손해배상청구 1,231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21건(34.2%), 직권조정결정 43건(3.5%), 조정불성립결정 223건(18.1%), 기각 131건(10.6%), 각하 10건(0.8%), 취하 403건(32.7%)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성립 사건 수는 감소했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고 판단되어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피해구제된 사건 수는 증가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정정·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와 같이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2. 1. 1. ~ 2024.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2	1,009 (100.0)	251 (24.9)	18 (1.8)	13 (1.3)	226 [5]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2023	1,312 (100.0)	476 (36.3)	15 (1.1)	10 (0.8)	270 [8]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2024	1,231 (100.0)	421 (34.2)	23 (1.9)	20 (1.6)	223 [6]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1,231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2건(1.8%)으로 전년 28건(2.1%)에 비해 감소했다. 금전배상을 포함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수정 및 열람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구제된 조정사건 수는 733건(59.5%)이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22	1,009	18	1.8%
2023	1,312	28	2.1%
2024	1,231	22	1.8%

② 청구액 및 조정액

2024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2,200억 원, 최저액은 1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500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이었다.

2024년 손해배상 인용건수는 전년도 28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인용 최고액과 최저액은 500만 원, 30만 원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평균 인용액은 1,450,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2024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이었다.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인 신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기업에게 ‘갑질’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한 사건으로, 조정대상 기사의 열람차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직권조정결정되었다.

사례 6. 손해배상 최고 인용 사례

피신청인 언론사는 회계법인인 신청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감사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제보에 의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했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2. 1. 1. ~ 2024.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2	1	220,000,000,000	372,306,712	20,000,000
2023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2024	1	220,000,000,000	620,578,012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2. 1. 1. ~ 2024.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2	500,000	10,000,000	2,592,857	2,000,000
2023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2024	300,000	5,000,000	1,450,000	1,000,000

③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4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151건(93.5%)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59건(4.8%), 음성권 침해 6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151건 중 11건(1%)만이 금액 지급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전체 80건의 13.8%인 11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59.5%)과 비교해 분석하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들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범죄 혐의 보도에서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신청인이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4. 1. 1. ~ 2024.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건수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1건	300,000	5,000,000	1,512,5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8건	500,000	5,000,000	1,642,857	1,000,000	500,000
기타	3건	750,000	1,000,000	833,333	750,000	750,000

사례 7.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악의적 비방 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채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해당 채널 운영자의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과 관계없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된 점이 인정되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8. 명예훼손 침해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승진을 목적으로 서류를 변조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신청인의 단정적인 보도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 혐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실관계 정정이 필요한 점, 취재과정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와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151 (100.0)	405 (35.2)	42 (3.6)	213 (18.5)	117 (10.2)	8 (0.7)	259 (22.5)	107 (9.3)
초상권	59 (100.0)	8 (13.6)	1 (1.7)	10 (16.9)	8 (13.6)	2 (3.4)	20 (33.9)	10 (16.9)
음성권	6 (100.0)	4 (66.7)						2 (33.3)
성명권	1 (100.0)						1 (100.0)	
프라이버시	1 (100.0)						1 (100.0)	
재산상손해	2 (100.0)	1 (50.0)			1 (50.0)			
기타	11 (100.0)	3 (27.3)			5 (45.5)		2 (18.2)	1 (9.1)
계	1,231 (100.0)	421 (34.2)	43 (3.5)	223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일간신문(49.5%), 방송(44.5%), 주간신문(40.4%)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조정성립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신문(34.3%), 뉴스통신(30.1%)에서는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체인 잡지에서도 해당 매체의 온라인 기사에 보도계재가 이뤄져 60%가 취하되기도 하였다.

이는 보도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신청인들이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 일부 열람차단 또는 기사수정과 같이 신속한 피해구제조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피신청인들은 온라인 매체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 있고 원만한 협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매체유형 \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신문	일간 신문	287	142	19	32	13	13	45	23
		(100.0)	(49.5)	(6.6)	(11.1)	(4.5)	(4.5)	(15.7)	(8.0)
	주간 신문	89	36	9	21	8		7	8
		(100.0)	(40.4)	(10.1)	(23.6)	(9.0)		(7.9)	(9.0)
방 송		317	141	19	77	13	6	21	40
		(100.0)	(44.5)	(6.0)	(24.3)	(4.1)	(1.9)	(6.6)	(12.6)
잡 지		10			4			6	
		(100.0)			(40.0)			(60.0)	
뉴스통신		176	53	6	30	27		53	7
		(100.0)	(30.1)	(3.4)	(17.0)	(15.3)		(30.1)	(4.0)
인터넷신문		2,537	870	82	382	226	15	808	154
		(100.0)	(34.3)	(3.2)	(15.1)	(8.9)	(0.6)	(31.8)	(6.1)
인터넷뉴스 서비스		473	197	19	86	41	4	84	42
		(100.0)	(41.6)	(4.0)	(18.2)	(8.7)	(0.8)	(17.8)	(8.9)
기 타		48	13		17	8		4	6
		(100.0)	(27.1)		(35.4)	(16.7)		(8.3)	(12.5)
계		3,937	1,452	154	649	336	38	1,028	280
		(100.0)	(36.9)	(3.9)	(16.5)	(8.5)	(1.0)	(26.1)	(7.1)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지난해 접수된 3,937건의 사건 중 대다수가 명예훼손 사건(3,810건, 96.8%)이었다. 이 외에도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명예훼손 사건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37.6%(1,431건)이고, 조정절차 중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 25.8%(982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은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

립 사건은 631건(16.6%), 기각 312건(8.2%), 미구제 취하 267건(7.0%), 직권조정결정 151건(4.0%), 각하 36건(0.9%)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불성립결정(16.6%)은 전년도(19.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25.8%) 비율도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조정 전 당사자 간 사전 합의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청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8.2%) 및 각하(0.9%)되는 사건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사건 중 초상권 침해 사건은 2.2%(85건)를 차지했으며, 조정성립률은 9.4%로, 명예훼손 사건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피해구제로 인해 취하된 사건 비율이 42.4%(36건)로 높아,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권 침해 사건은 청구 건수(6건)가 적었으나, 조정성립률이 66.7%(4건)로 매우 높았다. 성명권 침해(3건) 및 사생활 침해(1건) 사건은 사건 수가 극히 적어 일반적인 경향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정 절차 이전에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취하를 통해 모든 사건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810	1,431	151	631	312	36	982	267
	(100.0)	(37.6)	(4.0)	(16.6)	(8.2)	(0.9)	(25.8)	(7.0)
초상권 침해	85	8	3	18	8	2	36	10
	(100.0)	(9.4)	(3.5)	(21.2)	(9.4)	(2.4)	(42.4)	(11.8)
음성권 침해	6	4						2
	(100.0)	(66.7)						(33.3)
성명권 침해	3						3	
	(100.0)						(100.0)	
사생활 침해	1						1	
	(100.0)						(100.0)	
재산상 손해	4	3			1			
	(100.0)	(75.0)			(25.0)			
기타	28	6			15		6	1
	(100.0)	(21.4)			(53.6)		(21.4)	(3.6)
계	3,937	1,452	154	649	336	38	1,028	280
	(100.0)	(36.9)	(3.9)	(16.5)	(8.5)	(1.0)	(26.1)	(7.1)

*()안의 숫자는 %

사례 9. 명예훼손

피신청인 언론사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신청인 재단이 지정후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정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모욕적인 수준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조정대상기사 및 유튜브 영상 하단에 반론보도하고, 유튜브 댓글창을 닫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0. 초상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대한피부과의사회로부터 고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한 적이 없으며, 진료과목이 피부과라서 '피부과 의사'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고,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다면서 정정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의 유튜브를 캡처하여 보도한 초기 보도에서 불러 처리되지 않아 신청인이 특정되었고, 이후 비식별 조치 또한 미흡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언론사의 유감 표명과 함께 기사 열람차단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1. 음성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과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음성을 변조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 변조 조치가 신청인의 말투 및 억양으로 인해 특정될 수 있을 수준으로 미흡하게 처리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유튜브 및 인터넷 기사의 신청인의 음성이 노출된 영상을 편집하여 신청인의 음성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2. 성명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명 식당의 폐업 이유를 보도하면서 식당 사업주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명 식당의 업주라는 이유로 가족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론보도로 협의하고, 기사 수정을 통해 신청인의 실명을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3. 프라이버시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과 누리꾼의 반응을 기사화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동의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신청인이 특정되었고 이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열람차단을 요청했다.

심리 전 언론사가 기사를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사건은 취하하는 것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한 비율이 2022년 53.5%, 2023년 54.5%, 2024년 54.7%로 계속해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개인 청구 사건 2,154건 중 687건(31.9%)이 조정성립되었고, 717건(33.3%)이 열람차단 및 보도게재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으며, 378건(17.5%)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건수는 정치인, 개인사업가, 교육자, 회사원 등의 순이었고, 조정성립률은 공공기관장(73.7%), 고위공무원(70.0%), 종교인(63.0%), 조합대표 및 협회장(55.2%) 등의 순이었다.

단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공공단체(68.5%), 언론사(55.3%), 기업체(5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정치인	377	114	7	70	37		94	55
	(100.0)	(30.2)	(1.9)	(18.6)	(9.8)		(24.9)	(14.6)
공공기관장	19	14	3				1	1
	(100.0)	(73.7)	(15.8)				(5.3)	(5.3)
고위공무원	20	14		2			4	
	(100.0)	(70.0)		(10.0)			(20.0)	
공무원	151	30	2	18	2		91	8
	(100.0)	(19.9)	(1.3)	(11.9)	(1.3)		(60.3)	(5.3)
전문직 종사자	109	55	4	20	3	2	23	2
	(100.0)	(50.5)	(3.7)	(18.3)	(2.8)	(1.8)	(21.1)	(1.8)
문화예술인	91	34	7	18	5		22	5
	(100.0)	(37.4)	(7.7)	(19.8)	(5.5)		(24.2)	(5.5)
종교인	27	17		10				
	(100.0)	(63.0)		(37.0)				
회사원	260	84	6	25	4		128	13
	(100.0)	(32.3)	(2.3)	(9.6)	(1.5)		(49.2)	(5.0)
언론인	98	25		20	5		46	2
	(100.0)	(25.5)		(20.4)	(5.1)		(46.9)	(2.0)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교육자	287	75	11	26	3		165	7
	(100.0)	(26.1)	(3.8)	(9.1)	(1.0)		(57.5)	(2.4)
개인사업자	327	117		81	8	10	91	20
	(100.0)	(35.8)		(24.8)	(2.4)	(3.1)	(27.8)	(6.1)
연예인	11	1			3		7	
	(100.0)	(9.1)			(27.3)		(63.6)	
학생	36	10		2	8		14	2
	(100.0)	(27.8)		(5.6)	(22.2)		(38.9)	(5.6)
시민활동가	8	2		4	2			
	(100.0)	(25.0)		(50.0)	(25.0)			
조합대표 (협회장)	29	16	4				2	7
	(100.0)	(55.2)	(13.8)				(6.9)	(24.1)
기타	304	79	6	82	67	19	29	22
	(100.0)	(26.0)	(2.0)	(27.0)	(22.0)	(6.3)	(9.5)	(7.2)
계	2,154	687	50	378	147	31	717	144
	(100.0)	(31.9)	(2.3)	(17.5)	(6.8)	(1.4)	(33.3)	(6.7)

* () 안의 숫자는 %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2024. 1. 1. ~ 2024.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76	36		18			22	
	(100.0)	(47.4)		(23.7)			(28.9)	
지자체	181	87	20	31			38	5
	(100.0)	(48.1)	(11.0)	(17.1)			(21.0)	(2.8)
공공단체	54	37	4	2			10	1
	(100.0)	(68.5)	(7.4)	(3.7)			(18.5)	(1.9)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일반단체	819	288	28	69	178	1	140	115
	(100.0)	(35.2)	(3.4)	(8.4)	(21.7)	(0.1)	(17.1)	(14.0)
종교단체	19	9		1	1		7	1
	(100.0)	(47.4)		(5.3)	(5.3)		(36.8)	(5.3)
기업체	456	228	45	87	9	6	69	12
	(100.0)	(50.0)	(9.9)	(19.1)	(2.0)	(1.3)	(15.1)	(2.6)
언론사	47	26	3	12			6	
	(100.0)	(55.3)	(6.4)	(25.5)			(12.8)	
교육기관	131	54	4	51	1		19	2
	(100.0)	(41.2)	(3.1)	(38.9)	(0.8)		(14.5)	(1.5)
계	1,783	765	104	271	189	7	311	136
	(100.0)	(42.9)	(5.8)	(15.2)	(10.6)	(0.4)	(17.4)	(7.6)

*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4.2%(2,923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재부 사건은 2022년 74.9%(2,377건), 2023년 76.2%(3,114건)로 꾸준히 70% 중반 정도의 비중을 보여 왔다.

서울중재부의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6.7%(1,073건), 당사자간 협의나 화해가 이뤄져 취하로 피해구제된 것이 26.5%(775건), 조정불성립결정 16.4%(4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 기각 10.0%(292건), 피해구제 없는 미구제 취하 7.0%(205건), 직권조정결정 2.1%(62건), 각하 1.3%(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5.8%, 1,014건)의 경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사건이 37.4%(37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구제된 취하 사건 25.0%(253건), 조정불성립 16.9%(171건) 순으로 서울중재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외 직권조정결정 9.1%(92건), 피해구제 없는 미구제 취하 7.4%(75건), 기각 4.3%(44건)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서울		2,923	1,073	62	478	292	38	775	205
		(100.0)	(36.7)	(2.1)	(16.4)	(10.0)	(1.3)	(26.5)	(7.0)
부산		69	37		4	3		25	
		(100.0)	(53.6)		(5.8)	(4.3)		(36.2)	
대구		126	30		43	5		34	14
		(100.0)	(23.8)		(34.1)	(4.0)		(27.0)	(11.1)
광주		111	68	9	8	3		18	5
		(100.0)	(61.3)	(8.1)	(7.2)	(2.7)		(16.2)	(4.5)
대전		82	23		21	11		25	2
		(100.0)	(28.0)		(25.6)	(13.4)		(30.5)	(2.4)
경기		226	73	18	36	1		73	25
		(100.0)	(32.3)	(8.0)	(15.9)	(0.4)		(32.3)	(11.1)
강원		38	22		8			4	4
		(100.0)	(57.9)		(21.1)			(10.5)	(10.5)
충북		101	34	12	11	19		9	16
		(100.0)	(33.7)	(11.9)	(10.9)	(18.8)		(8.9)	(15.8)
전북		158	43	39	31	2		40	3
		(100.0)	(27.2)	(24.7)	(19.6)	(1.3)		(25.3)	(1.9)
경남		61	41	6	5			3	6
		(100.0)	(67.2)	(9.8)	(8.2)			(4.9)	(9.8)
제주		42	8	8	4			22	
		(100.0)	(19.0)	(19.0)	(9.5)			(52.4)	
계		3,937	1,452	154	649	336	38	1,028	280
		(100.0)	(36.9)	(3.9)	(16.5)	(8.5)	(1.0)	(26.1)	(7.1)

*() 안의 숫자는 %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뉴스 이용자의 소비 형태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뉴스를 주로 소비했으나,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SNS와 동영상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해 포털 등을 조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했으나,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이 확대되지 못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2022년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대상을 보다 넓게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콘텐츠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가 언론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버·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의 93.8%, 피신청인의 7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방송사가 보도 영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도 전재하는 것 외에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위원회에 접수된 3,937건 중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신청이 262건(6.7%) 있었고, 이중 원보도를 매개한 건이 229건, 자체제작한 건이 33건이었다. 원보도를 매개하는 경우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자체제작 보도에 대한 신청이 2022년 19건, 2023년 28건, 2024년 33건으로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자체 생산되어 인격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다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피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영상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열람차단이나 블러처리하는 물론, 영상 뒷부분에 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영상의 제목 및 썸네일을 수정하는 식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에 대한 조치까지 합의하는 등 보도형태 및 피해양상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피해구제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조정사례를 누적·관리하여 향후 조정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를 전제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뉴스 콘텐츠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수정 또는 열람차단 청구권을 법제화하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급

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정실무에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사례 14.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①

피신청인 언론사는 재판 진행 중 증거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신청인 대표가 사색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신청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신청인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하단과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에 각각 게재하고, 기사 제목과 유튜브 영상 제목, 유튜브 썸네일 제목을 모두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5.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②

피신청인 언론사는 정부 비밀요원이었던 신청인이 미인계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보도했고, 신청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 언론사 다시보기 영상 및 해당 방송을 전제한 OTT 플랫폼(티빙, Wavve, 애플TV)의 영상 뒷부분에 자막 형태로 송출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게재한 피신청인 언론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의 영상을 모두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 평가

2024년 위원회는 총 3,937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전년 4,085건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4천 건에 가까운 사건 수이며, 피해구제율은 72.5%를 기록하였다. 한편,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9.7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7.9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신청인 3.1점, 피신청인 2.1점이 각 상승하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의 경우 심리 전후 절차 안내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정절차 안내문을 재정비하는 등 당사자들의 조정절차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4천 건 내외로 유지되는 배경은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인터넷에 게재된 원보도를 다른 매체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게재하는 현상이 확산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일 신청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다량 신청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중재부에서는 대표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하여 합의 내용을 다른 사건에 제시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정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도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4.8일이었는데, 2023년에는 21.5일로 늘어났으며,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는 약 25.7일로 나타나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조정사건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각 중재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14일 이내 조정기일 지정이 곤란한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의 장점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라도 처리기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재위원 정원을 늘려 중재부를 증설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한편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건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이후, 위원회는 유튜브 영상물에 대한 조정사건을 꾸준히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 구제된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뉴스제공 플랫폼 특성에 따른 조정합의안을 도출하여 공유하고 조정 실무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중재부에 제공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외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조정신청방법 설명을 보강하고 신청서 예문을 보다 간결화했으며, 조조정불성립결정 안내문 신설 및 기타 안내문 내용 보완을 통해 조정당사자의 절차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재위원 연수에서 조정기법을 공유하고 <중재위원 실무가이드>를 발간·배포하여 신임 위원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무 개선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위원회 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개정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대외 협력 강화에도 노력해 왔다. 2025년에도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신설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조정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보도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침해 사항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심의를 통해 법익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한 지면 매체에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는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침해 유형별로 안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①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법익 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 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원회는 반기별로 매체의 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게시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 위원회는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2024년 위원회는 총 2,716개의 매체를 모니터링 하여, 400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942건 시정을 권고했다. 의결된 시정권고의 내용은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각 회의의 의결현황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시정권고심의 모니터링의 이론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연 4회의 심의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살 보도, 사적제재로 인한 인권권 침해 등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언론 보도 유형을 학습했으며, 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법률(형사절차,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통신비밀보호법, 소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관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였다. 2023년 이래 꾸준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 각종 차별표현과 관련하여서도, 유관기관의 심의사례 등을 살펴보고 위원회의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였다.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4년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가 241건(2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자살 보도’ 226건(24%), ‘기사형 광고’ 161건(17.1%), ‘사생활 보호 등’ 131건(13.9%), ‘범죄 사건 보도’ 62건(6.6%) 등의 순이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상위 5개 침해 유형은 작년과 거의 유사하나, 작년에 상위 5개 항목에 포함되었던 ‘충격·혐오감’ 유형이 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작년에 상위 5개 침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 사건 보도 등’ 유형이 2024년에 포함되었다.

표 22.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2022	1,239 (100)	514 (41.5)	19 (1.5)	56 (4.5)	21 (1.7)		12 (1.0)	52 (4.2)		50 (4.0)	20 (1.6)	41 (3.3)	21 (1.7)	108 (8.7)	8 (0.6)	16 (1.3)	33 (2.7)		209 (16.9)	59 (4.8)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2024	942 (100)	131 (13.9)		62 (6.6)	1 (0.1)		8 (0.8)	47 (5.0)		241 (25.6)		7 (0.7)	4 (0.4)	226 (24)	4 (0.4)		17 (1.8)		161 (17.1)	3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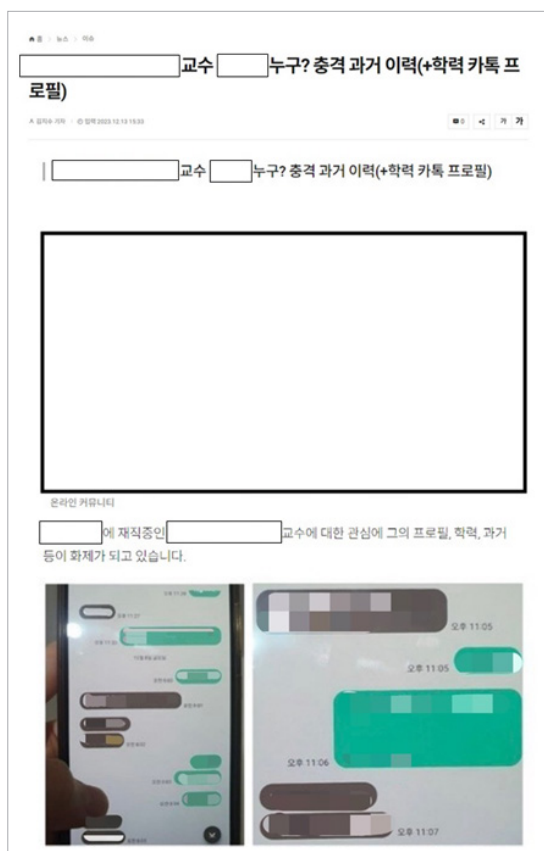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보호 등

2024년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131건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며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 사생활, 통신내역 등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유명인에 대해 보도하며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학 사제의 불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 신상 및 사적 통신내역을 여과 없이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기사가 지역 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받은 사건이며, 일부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아닌 사인(私人)의 신상과 사적 통신 내용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격권 침해 우려가 큰 보도들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고, 시정권고를 받은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 하였다.

사례 1. 사생활 보호 등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학 사제의 불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 신상 및 사적 통신내역을 여과 없이 공표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나. 범죄사건 보도

2024년 '범죄사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6.6%이다. 2024년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법률과 상응하도록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를 일부 개정하였다. 위원회는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라,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 결정이 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론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양주시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태권도장의 이름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학원이 수년간 해당 이름으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이 단독 대표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원명을 통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은 법률에 의해 신상 공개가 결정 되었거나 향후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위원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해당 보도는 태권도장 이름을 삭제 조치 하였다.

다. 신고자 등 보호

2024년 '신고자 등 보호'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47건으로, 전체의 5%이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특정 범죄에 관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혹은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표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의제강간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설령 구체적 신상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표된 직책명이 학교 내에서 극히 소수 인원인 점, 피의자들이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해당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 중으로 인신에 제약이 없었던바, 보복 등의 예방을 위한 신고자 보호가 요구되는 보도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시정권고를 받은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수정 혹은 삭제 조치했다.

사례 2. 범죄사건 보도



-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표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사례 3. 신고자 등 보호



- 의제강간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표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라. 차별금지

2024년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41건으로, 전체의 25.6%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장애 차별 표현으로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기사 제목에 ‘눈먼 돈’, ‘병어리 냉가슴’, ‘꿀먹은 병어리’, ‘결정 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표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 보도의 사회적 영

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차별 표현을 사용한 보도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대체 가능한 표현 등을 함께 안내하는 등 보도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례 4. 차별 금지



-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을 사용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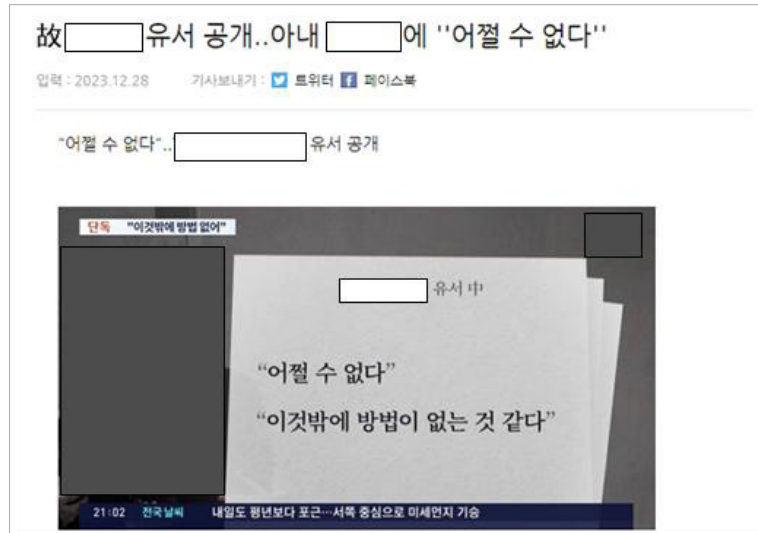
마. 자살 보도

2024년 ‘자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26건으로, 전체의 24%이다. 위원회는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보도,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표현을 공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묘사한 유명인의 유서 문구를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가지는 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문구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유서 문구를 공표한 보도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시정권고를 받은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수정 혹은 삭제 조치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시작한 바 있다.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여 유사한 처지의 독자들이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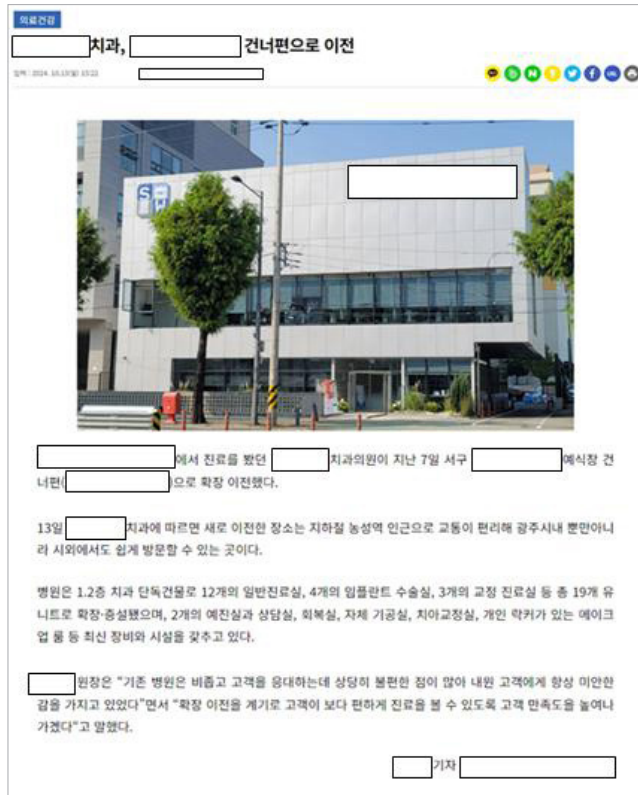
사례 5. 자살 보도



-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하는 문구를 보도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바. 기사형 광고

2024년 ‘기사형 광고’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161건으로, 전체의 17.1%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기사형 광고로, 바이라인이 포함된 기사의 형태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보도한 경우이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해당 광고에 대해 기사에 준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관련 기사형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광고성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 모 병원의 이전 소식 및 광고성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함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3 매체 유형별 분석

2024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794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83건(8.8%), 뉴스통신 63건(6.7%) 순이었다. 최근 3년간의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비율이 계속해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기반 매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반면 기사의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법익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자발적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관련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도의 공유 등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표 2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2. 1. 1. ~ 2024.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체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2	1,239 (100)	21 (1.7)	44 (3.6)	3 (0.2)		81 (6.5)	1,083 (87.4)	7 (0.6)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	
2024	942 (100)	29 (3.1)	54 (5.7)	2 (0.2)		63 (6.7)	794 (84.3)	

4 법의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4년 시정권고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인터넷신문 3곳, 뉴스 통신 2곳이다. 상위 5개 매체가 받은 시정권고 결정은 총 120건으로, 전체 결정건수인 942건의 12.7%에 해당한다.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전체 매체가 400곳임을 감안할 때, 상위 5개 매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법의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제3절 평가

2024년에 위원회는 총 942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이 중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8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를 받은 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법의 침해가 인터넷을 통해 지속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4년에는 특히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대해 시정권고를 시작하여 총 85건의 결정을 내렸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는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유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모방자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위원회는 자살

보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에도 장애,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언론보도가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2025년에 위원회는 심의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단계부터 안건 상정에 이르기까지 심의 절차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적, 법제적 이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의 이론적 기반을 확충하며 유관기관의 심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시정 권고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근거하여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등)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나뉜다.

- 자체심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안건에 대해 선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시정을 요구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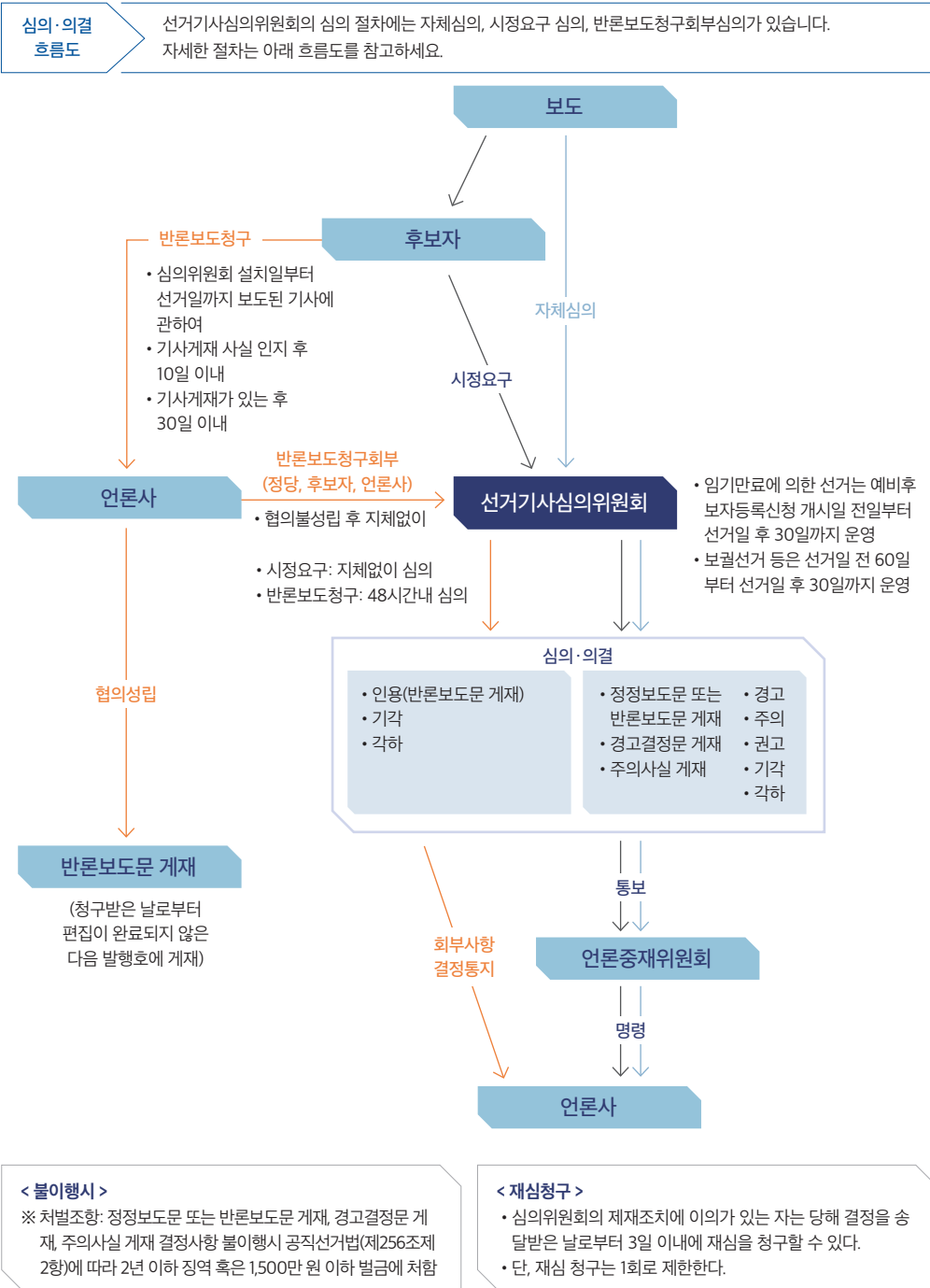
-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과 언론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는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위 세 가지 유형의 심의를 거친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균형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선심위규칙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심의 업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선심위 결정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심의·의결 흐름도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각각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 2024년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표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심창섭	(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현)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정군기	(현) 동국대 객원교수	국민의힘
	이 훈	(현) 경희대 미디어학과 부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동현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문현숙	(전)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한국기자협회
	하상응	(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문한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는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상기 심의위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심의위원을 겸직하였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국회의원	300	지역구(253) 및 비례대표(47)
기초단체장	2	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
광역의원	17	서울 노원구,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화성시, 강원 양구군,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원시, 경남 밀양시, 제주 제주시
기초의원	26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화성시, 강원 동해시,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청주시 타선거구 및 마선거구, 충북 제천시, 충북 괴산군, 충남 천안시, 충남 부여군 가선거구 및 다선거구, 전북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나. 심의·의결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427개(중앙일간지 29개, 지역일간지 137개, 종합주간지 27개, 지역주간지 212개, 월간지 9개, 뉴스통신 13개)의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자체심의 57건, 시정요구심의 7건 등 총 64건을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57건 가운데 주의사실 게재 5건(8.8%), 경고 9건(15.8%), 주의 27건(47.4%), 권고 3건(5.3%)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안건 13건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4건(59.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23건(40.4%)이었고, 보도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23건(40.4%), 후보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터뷰 보도 16건(28.1%), 후보자의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

의 동정, 주요 공약 등을 부각 보도한 일반 선거기사 14건(24.6%),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3건(5.3%), 게재가 제한된 광고가 1건(1.8%)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28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간지 10건(17.5%), 뉴스통신 8건(14%), 중앙일간지 7건(12.3%), 중앙월간지 3건(5.2%) 및 지역월간지 1건(1.8%) 순이었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총 7건이었고, 중앙일간지가 3건,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중앙월간지, 뉴스통신이 각 1건이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심위는 반론보도문 게재 2건,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 각 1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안건 1건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2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주의사실 게재 조치가 내려진 시정요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청구심의도 1건 진행되었는데, 추가 의견진술 등 소명 내용이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인용되어 제재조치가 경고로 하향되었다.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3건의 안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는데, 뉴스통신이 2건, 지역일간지가 1건이었다.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뉴스통신 안건 2건은 모두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받았으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등을 부각 보도한 인터넷 기사로 공정성을 위반한 지역일간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3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없었다.

표 2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3. 12. 11. ~ 2024. 5.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 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중앙 일간지	7 (12.3)	3 (8.8)	4 (17.4)	0 (0.0)	0 (0.0)	4 (17.4)	3 (18.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1.1)	1 (33.3)	3 (23.1)
지역 일간지	28 (49.1)	15 (44.1)	13 (56.5)	0 (0.0)	6 (42.9)	13 (56.5)	6 (37.5)	0 (0.0)	3 (100)	0 (0.0)	0 (0.0)	0 (0.0)	7 (77.8)	13 (48.1)	0 (0.0)	8 (61.5)
지역 주간지	10 (17.5)	8 (23.5)	2 (8.7)	0 (0.0)	3 (21.4)	2 (8.7)	5 (31.3)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8 (29.6)	1 (33.3)	0 (0.0)
중앙 월간지	3 (5.2)	3 (8.8)	0 (0.0)	0 (0.0)	0 (0.0)	0 (0.0)	2 (12.5)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2 (7.4)	1 (33.3)	0 (0.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 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월간지	1 (1.8)	1 (2.9)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뉴스 통신	8 (14.0)	4 (11.8)	4 (17.4)	0 (0.0)	4 (28.6)	4 (17.4)	0 (0.0)	0 (0.0)	0 (0.0)	0 (0.0)	0 (0.0)	4 (80)	1 (11.1)	1 (3.7)	0 (0.0)	2 (15.4)
계	57 (100)	34 (59.6)	23 (40.4)	0 (0.0)	14 (24.6)	23 (40.4)	16 (28.1)	0 (0.0)	3 (5.3)	1 (1.8)	0 (0.0)	5 (8.8)	9 (15.8)	27 (47.4)	3 (5.3)	13 (22.8)

• 시정요구심의

(2023. 12. 11. ~ 2024. 5.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 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안내문 송부	기각
중앙 일간지	3 (42.9)	0 (0.0)	3 (50)	0 (0.0)	3 (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100)	0 (0.0)	0 (0.0)	1 (50.0)
종합 주간지	1 (14.3)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지역 주간지	1 (14.3)	0 (0.0)	1 (16.7)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앙 월간지	1 (14.3)	1 (100)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뉴스 통신	1 (14.3)	0 (0.0)	1 (16.7)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계	7 (100)	1 (14.3)	6 (85.7)	0 (0.0)	6 (85.7)	0 (0.0)	0 (0.0)	0 (0.0)	1 (14.3)	0 (0.0)	1 (14.3)	2 (28.6)	1 (14.3)	0 (0.0)	1 (14.3)	2 (28.6)

• 재심청구심의

(2023. 12. 11. ~ 2024. 5. 10.)

의결번호	원심결정	결과
제22대 국선-재심1	제22대 국선-시심5 (주의사실 게재)	일부인용 (주의사실 게재 →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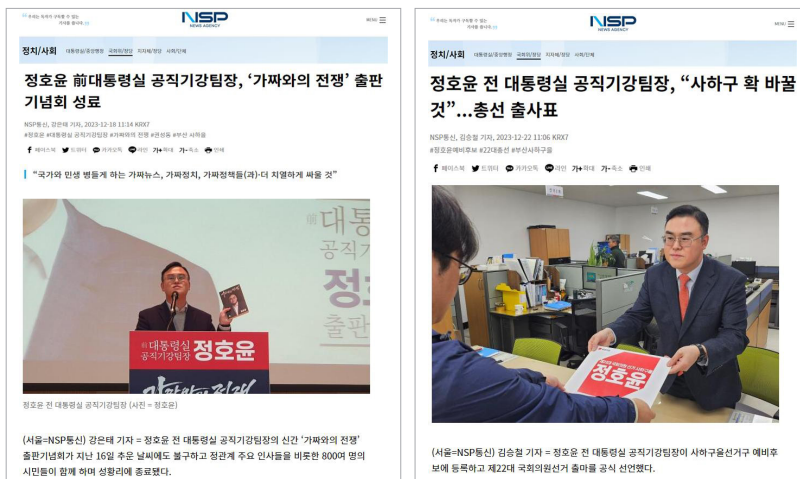
표 26.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4. 2. 10. ~ 2024. 5.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뉴스 통신	2 (66.7)	2 (66.7)	0 (0.0)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계	3 (100)	3 (100)	0 (0.0)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소식과 동향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동일 선거구 내 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함

대구경북일보

2024년 11월 29일
11면 (종합)

「입장론」 권택홍, "달성습지에 두루미는 안 오고 정치철새만 오나"

"6전 6패 유명하
'박근혜 팔이', 대구 시민 모독"



유명하 변호사가 22일, 달성구 갑 출마를 선언 했다.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출마가 현법상 권리지만 그의 출마 소식에 대구 시민들 특히, 달성갑 주민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공직선거에서 6전 6패로 참패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박근혜 팔이'로 아무 연고도 없는 달성갑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건 주권자를 모독하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다 경기도 군포로 이사했습니다.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에 오기 전엔 대구와 특별한 인연도 없었습니다.

'친박 중의 친박'이라 불리는 그의 정치 이력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17,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속 출마했으나 모두 참패했습니다. 17, 18대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김부겸 후보에게 연거푸 참패했습니다. 19대는 새누리당 후보로 세 번째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군포에서만 세 번 연거푸 낙선하자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구를 옮겼습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진박' 중에 '진박'임을 과시했으나, 당시 김부겸 대표의 옥쇄파동으로 출마를 못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4번이나 연거푸 물을 먹은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달성군으로 이주한 2022년 4월 뜬금없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을 올리는 등 '박근혜 팔이'를 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김재원에 이어 3등으로 탈락했습니다. 5월에는 홍준표 시장이 내놓은 수성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에서 또 탈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명하 씨는 정치인으로서는 기본 자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군포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9년, '군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변론을 맡았습니다. 변론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인

로서 인격과 품위를 의심케 하는 수많은 막말을 SNS에 남겨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의 행태를 보면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노래 가사가 생각 납니다. 대구에서 구의원에 출마해도 자기 지역에서 몇 년을 헌신하고 준비합니다. 하물며, 대구시장과 국회의원에 연거푸 달려드는 모습은 약한 곳을 골라 요행으로 욕망을 채우려는 행태였습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비루한 하이에나' 꼴입니다.

우리 성서지역은 올 3월 신당중학교가 폐교되고 성서초등학교 2024년 입학생은 34명에 불과합니다. 2000년 60만을 넘었던 달성구 인구는 2023년 현재 5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달성구 갑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달성구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바로 우리 성서의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총력을 다해 대구 경제의 심장인 '성서산단의 산단대개조 사업완성'과 '노후 산단 규제개혁', 대구산업선 개통과 성서공단 호림역 건설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해야 합니다. 성서행정타운과 호산중학교 부지의 공공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숙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성서지역의 '도야'와 '소말'이라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여야가 뜨겁게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달성습지에 학수고대하던 두루미는 오지 않고 오로지 '박근혜 팔이'로 약제인 현역의원을 밀어내고 공천만 노리는 '정치철새'만 날아오니 기가 잡니다. 달성갑 주민들께서 지난 21대처럼 국회의원도 '난장판 공천'으로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고소 고발만 난무하는 '경관'을 만드는 걸 용서치 않을 것 입니다.

유명하씨도 여섯 번이면 공직선거에 충분히 도전했으니, 이제 그 촉함을 알고 달성갑 주민들을 모독하는 정치 늑을 보단 달성에 내려와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잘 모셔 주시길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고드립니다.

(14.1*28.6cm)

- 특정 후보자가 타 후보자를 비판하는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를 결정함

사례3.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정정보도문 게재)



- 동일 선거구 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호 및 소속 정당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포함한 내용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함

2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4년 10월 16일 실시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2024년 8월 17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선거구는 총 5곳으로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실시사유 확정 일에 임박하여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가되고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를 둘러싼 중요도와 관심도가 적지 않았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서정찬	(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파트너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현)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이영태	(현) 공정언론국민연대 감사	국민의힘
	이 훈	(현) 경희대 미디어학과 부교수	한국언론학회
	최병석	(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성기철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한국신문협회
	한성민	(현)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심창섭	(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총 5곳)

지방자치 단체의 장	4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교육감	1	서울 교육감

나. 심의·의결현황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197개(중앙일간지 29개, 지역일간지 63개, 기타일간지 5개, 종합주간지 28개, 지역주간지 50개, 월간지 9개, 뉴스통신 13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자체심의 14건, 시정요구심의 3건 등 총 17건을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14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의사실 게재 1건(7.1%), 경고 5건(35.7%), 주의

6건(42.9%), 권고 2건(14.3%)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건(57.1%),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6건(42.9%)이었고, 보도 유형별로는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부각하거나 편향적으로 보도한 일반선거기사 8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6건(42.9%)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주간지가 전체의 절반인 7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통신 4건(28.6%), 지역일간지 2건(14.3%), 중앙일간지 1건(7.1%) 순이었다. 14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총 3건이었고, 대상 매체는 모두 지역주간지였다. 3건 모두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선거기사였는데, 하나의 안건에 여러 건의 기사나 칼럼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상 일반 선거기사로 대표 분류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건,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1건이었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심위는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결정문 게재 2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3건의 시정요구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표 27.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4. 8. 17. ~ 2024. 11. 15.)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중앙 일간지	1 (7.1)	1 (12.5)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지역 일간지	2 (14.3)	2 (25.0)	0 (0.0)	0 (0.0)	2 (25.0)	0 (0.0)	0 (0.0)	0 (0.0)	0 (100)	0 (0.0)	0 (0.0)	0 (0.0)	0 (0.0)	2 (33.3)	0 (0.0)	0 (0.0)
종합 주간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지역 주간지	7 (50)	3 (37.5)	4 (66.7)	0 (0.0)	3 (37.5)	4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80.0)	3 (50.0)	0 (0.0)	0 (0.0)
월간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뉴스통 신	4 (28.6)	2 (25.0)	2 (33.3)	0 (0.0)	2 (25.0)	2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1 (20.0)	1 (16.7)	1 (50.0)	0 (0.0)
계	14 (100)	8 (57.1)	6 (42.9)	0 (0.0)	8 (57.1)	6 (42.9)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5 (35.7)	6 (42.9)	2 (14.3)	0 (0.0)

- 시정요구심의

(2024. 8. 17. ~ 2024. 11. 15.)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3	2	1	0	3	0	0	0	0	0	1	2	0	0	0	0
주간지	(100)	(100)	(100)	(0.0)	(100)	(0.0)	(0.0)	(0.0)	(0.0)	(0.0)	(100)	(100)	(0.0)	(0.0)	(0.0)	(0.0)
계	3 (100)	2 (66.7)	1 (33.3)	0 (0.0)	3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illegible]

-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타 후보자들에 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일반 선거기사 및 칼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경고결 정문 게재 조치함

사례 2.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 특정 후보자의 동향과 이력, 출마 관련 입장 등을 담은 인터뷰 및 일반 선거기사를 전면면에 배치하는 등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며 이를 우호적으로 평가한 반면, 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아 주의를 결정함

사례 3.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반론보도문 게재)



- 후보자 관련 보도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아니하고 의혹을 부각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유권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함

민주당 장세일 후보, 여론조사 39.3%로 오차범위 밖 선두

조국혁신당 장현 32.7%로 추격, 진보당 이석하 15.1% · 무소속 양재휘 4.6%
가상 대결, 장세일 42.2% vs 장현 39.2%, 오차범위 내 접전
영광군수 재선거, 전국적 관심 속 치열한 표심 싸움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오차범위 밖 선투’ 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를 결정함

[illegible]

- 특정 후보자의 주요 이력 및 공약 등을 상세하게 담은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주의를 결정함

3 심의인력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선거기사심의 전문성 제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운영면서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별 특징을 고려하여 심의 대상 매체를 선정하고 매체 특성과 변동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였다. 동시에 선거보도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게재 시기, 빈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상반기 4명, 하반기 1명의 모니터링 전문 심의인력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심의의 개념 및 역대 결정 사례, 모니터링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심의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심의인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선거구 현안이나 다양한 심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이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 심의사례를 부서 내에서 공유하여 심의대상 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선거기사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안정적인 심의업무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 점검 및 개선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선심위 사례를 기반으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기사심의제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선거 보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선심위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별도 공고를 통해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기존에 구성된 선심위 심의위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심의 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24년 운영된 선심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출범 전후로 세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중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심위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선심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심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선심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심의대상 매체에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과 함께 심의기준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선거기사심의편람>과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을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심의기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선심위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국회의원선거와 40여 개의 선거구에서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비해 하반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선거구와 심의대상 매체수 등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선거의 규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선심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의결 사례 등 축적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선거 관련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총 64건을 심의·의결했고,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3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17건을 의결했다. 이중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건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자를 부각해 선심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건들 중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이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향 및 관련 이슈를 다수의 지면에서 장기간 보도한 사례가 많았다. 이 중에서도 경고결정문제재나 주의사실 게재 등 높은 수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진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를 한 경우로, 선거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원회는 선심위 안건 심의 시 단순히 안건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경위, 내용의 진위 여부, 기존 심의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선거기사심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지면, 인터넷, 방송 등 매체에 따라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기구가 각각 분산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 유사 사건에 관한 심의기구 간 제재조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구별 안건 현황과 의결 통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실무진과 심의 인력 간 상시 회의를 통하여 쟁점 사안을 공유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2025년에는 상·하반기 재·보궐선거가 각각 예정되어 있다.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선거는 아니지만, 역대 선심위 의결 사례와 통계를 적극 활용하여 선심위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한편, 선심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나아가, 2026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위의 출범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전국 심의대상 매체의 발행 여부와 언론사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실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심의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거기사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언론사 교육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선심위의 기능과 선거기사심의제도에 관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달리 선거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 선심위의 상설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선거기사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